

---

**2019학년도 관악학생생활관**  
**학부생활관 입주 신청 및 선발 안내**

---

**목 차**

0. 2019학년도 변경 사항	.....	p.1 ~ 2
1. 주요 일정	.....	p.3
2. 신청 자격	.....	p.4 ~ 5
3. 신청 방법	.....	p.5 ~ 6
4. 유의 사항	.....	p.6 ~ 7
[붙임 1] 호실선택사항 관련 안내	.....	p.8
[붙임 2] 구비 서류 안내	.....	p.9 ~ 11

---



## 2019학년도 변경 사항 안내

### □ 학부생 선발 방식 및 기준 변경

#### 가. 추진 배경

관악학생생활관 학부생의 선발은 2018년 선발까지 신입생은 시스템 무작위 추첨, 재학생은 각 단과대학에서 선발되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선발 기준 공개 요구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기존 학부생 입주자 선발 기준 검토를 통하여 선발 기준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일관된 기준으로 입주자 선발 기준 및 선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나. 추진 방향 및 변경 사항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선발 확대
- 신청 가능 지역 확대
- 공정하고 투명한 일관된 기준 마련
- 선발 기준에 관한 표준 마련 및 선발 기준 공개 원칙

※ 학부 재학생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변경 전	변경	비고
우선선발 대상 확대	·지체부자유자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자녀 ·차상위자 및 차상위자의 자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성적 하향 조정	전체 평점 평균 2.7 이상	전체 평점 평균 2.4 이상	소득기준 교내장학금 성적 적용
지역	부·모 주소지 서울 및 근교 신청 불가 (신청불가 지역: 서울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부천시, 시흥시, 과천시, 군포시)	부·모 주소지 서울(노원구, 도봉구 제외) 및 근교 신청 불가 (신청불가지역: 서울(노원구, 도봉구 제외),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부천시, 시흥시, 과천시, 군포시)	
선발 점수 배점	-	소득분위, 지역, 성적에 따라 점수 배점	
선발 방식	각 단과대학 선발	소득 60점, 거리 20점, 성적 20점 반영한 선발 점수에 의거 정원의 80%는 관악학생생활관 선발, 정원의 20%는 선발 후 남은 인원수 비례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선발 (단, 기준 공개 원칙)	
대기자	대기번호 무작위 부여	선발 점수에 따라 부여 (동일 점수일 경우 무작위 부여)	



※ 선발 점수 배점표

구분	기준	배점	
		신입	재학
소득	0분위	60	
	1분위	60	
	2분위	59	
	3분위	57	
	4분위	56	
	5분위	55	
	6분위	53	
	7분위	51	
	8분위	47	
	9분위, 10분위, 미신청		40
거리(지역)	지방	40	20
	경기·인천 원거리	37	17
	서울 원거리 경기·인천 근거리	34	14
	서울(서울 원거리 제외), 성남, 안양, 광명, 의왕, 부천, 시흥, 군포, 과천	신청불가	
성적 (누적 평점 평균)	96 ~ 100(4.0 이상 4.3 이하)	-	20
	89 ~ 95(3.3 이상 4.0 미만)		18
	80 ~ 88(2.4 이상 3.3 미만)		16
	성적 없음		5
	80미만 (2.4 미만)		신청불가

- 소득분위: 입주 신청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득분위 (2018년 기준)
- 서울 원거리: 서울시 노원구·도봉구
- 경기·인천 근거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인천시 계양구·남동구·부평구
- 경기·인천 원거리: 경기·인천 지역 중 신청불가 지역 및 경기·인천 근거리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소득분위 및 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 p6 신청 시 유의사항 내용 참조

다. 유의 사항

- 2019학년도 신청 변경 내용은 본 공지에 근거하며 관악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입주/퇴거안내 내용은 신청 전 보완 예정
- 관악학생생활관 신청 예정자는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맞춰 소득분위를 미리 산출 받아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 바람
- 선발변경에 관한 내용은 내국인 학부생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외국인 학부생은 해당사항 없음
- 외국인의 경우 관악학생생활관 상단 English버튼 누른 후 외국인 신청 공지 확인



# 2019학년도 관악학생생활관 학부생활관 입주 신청 및 선발 안내

모든 입주 신청자는 반드시 공지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지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주요 일정

### 1) 개괄



### 2) 일정

구 분	기 간
입주 신청	2019. 1. 7(월) 10:00 ~ 1.11(금) 18:00
입주대상자 발표	2019. 1. 28(월) 11:00
호실선택사항 신청	2019. 1. 28(월) 11:00 ~ 2. 1(금) 18:00
등록(서류제출/관리비납부)	2019. 2. 11(월) ~ 2. 15(금), 10:00~17:00

\*2019학년도에 한하여 신청 및 선발 일정 변경, 2020학년도부터 11월말 일정 유지

### 관리비 안내

- 921~926동 : 456,000원 (보증금 100,000원 별도)
- 919동 : 528,000원 (보증금 100,000원 별도)
- 906동 : 762,000원 (보증금 100,000원 별도)
- ※ 상기 금액은 1학기 거주분(3월~6월 중순)에 대한 관리비임. 관리비 납부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입주대상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2. 신청 자격

- 1) **신청 자격** : 2019학년도 1학기에 관악캠퍼스에서 수학 예정인 학부 재학생, 복학 예정자  
 ※ 2019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신입생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 학번이 부여된 모든 학생(2018년 2학기 입학생 포함)은 재학생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2) 신청 자격 제한 (※ '붙임2. 구비서류안내' 필수 확인)

- 가. 성적 미달자 : 전체학년 평점평균이 2.4 미만인 자  
 - 신입생 혹은 누적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나.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결핵,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 등)
- 다.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라. 최근 2년 이내(입주 신청 시점을 기준)에 관악학생생활관에서 누적 벌점 6점 이상(입주자격제한)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 마. 관악캠퍼스에 재학하지 않는 자 : 휴학생, 간호대 3~4학년, 의대 본과생
- 바. 서울 및 서울 근교 거주자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울(노원구, 도봉구 제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자  
 ※ 입주 이후, 부(父) 또는 모(母)가 주소지를 서울(노원구,도봉구 제외) 및 서울 근교로 이전할 경우 자진 퇴거하여야 하며, 적발 시 강제 퇴거(영구 퇴거) 조치됨  
 (서울 근교: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과천, 성남, 군포, 의왕)
- 사.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우선 선발 대상 (위 1), 2)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한함)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성적 및 지역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 및 자녀 : 아래 두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보훈청에서 발부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부자(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  
 - 대학 수업료 면제 대상 확인원 발부자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바.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 신청 방법

#### 1) 신청 방법

가. 관악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입주신청 → 로그인 → 학생생활관 → 관악학생생활관 → 입주신청

나.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 포털 마이스누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생생활관 → 관악학생생활관 → 입주신청

※ 2019년도 **진학 예정자**(학사→석사)의 경우, 대학원생활관 입주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반드시 2019년 1학기에 **진학하는 과정(대학원생)의 포털 마이스누 계정을 선택한 후** 입주 신청.

#### 2) 신청 결과 조회

가. 조회 방법: 관악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포털 마이스누에서 조회

-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생생활관 → 관악학생생활관 → 입주신청현황 '신청현황'
- '2019학년도 1학기'라는 정보가 확인되면 입주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신청 세부 내역은 '입주신청'메뉴에서 확인 가능

나. 주의 사항

- 입주 신청 기간(1. 7~1.11) 동안, 신청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단, 수정 이후 반드시 '저장'버튼을 클릭해야 수정 사항이 반영됨

#### 3) 신청 시 유의 사항

가. 호실 신청

- ㉠ 방학 거주 가능동(919~926, 일반동), ㉡ 방학 거주 불가능동(906, 신축동), ㉢ 복수지원 中 택 1
- ㉠ 방학 거주 가능동(919~926) : 동,하계 방학 중 생활관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 가능. 단, 건물(919동, 921~926동)을 선택할 수 없음. 무작위로 선발 및 배정됨.  
※ '방학 거주 가능동'에 입주한 경우에도 방학 중 임시 퇴거할 수 있음. 방학 중 거주 여부는 선택적임
- ㉡ 방학 거주 불가능동(906) : 동,하계 방학 중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 '방학 중 생활관 거주 불가'에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 복수지원 : ㉠과 ㉡ 모두 신청됨. 단, 건물 유형(906동, 919~926동)을 선택할 수 없으며, 무작위로 선발 및 배정됨. 복수지원자가 '방학 거주 불가능동(906)'에 선발될 경우, 동하계



방학 중 생활관에 거주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일반동 919동 배정자는 2019년 2학기 919동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2019년 2학기 동간 이동 하여야 할 수도 있음 \*공사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방학 중 생활관 전체기간 거주희망자는 입주 신청 시 '방학 중 거주 가능동(919~926)' 선택해야 함, 하·동계 등록 시 공식 종강일 이후 7일 거주 , 방학 전체 기간 거주 중 택 1
  - \* 방학 중 거주 가능동에 선발되더라도 방학 미등록 또는 방학 중 임시퇴거는 가능함
- 방학 중 거주 불가능동(906)'을 선택한 경우 방학 전체기간 거주는 불가능함, 하·동계 등록 시 공식 종강일 이후 7일 거주
  - \* 복수지원자가 '방학 중 거주 불가능동(906동)'에 선발될 경우도 이와 같음

#### 나. 지역

- 기준은 부·모 거주지이며 부·모 중 한명의 정보만 입력하거나,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중 가까운 지역이 기준이 되어 점수가 산정됨
- 지역에 따라 배점이 되기에 신청 지역 정보와 추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정보가 다를 시 생활관 입주가 취소됨에 유의

#### 다. 소득분위

- 2019학년도 입주 신청 시 소득분위 기준은 신청 당해 연도(2018년)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된 소득분위이며, 2018년 소득분위 미신청자의 경우 2019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2015년~2017년 소득분위, 2019년 소득분위가 있을 경우 선택하여 신청 가능
- **2019학년도 소득분위 증명서 제출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받은 소득분위**
  - \* **형제 및 자매가 받은 경우 해당자의 소득분위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로 확인**
  - \* 추후 대기자 및 신청예정자도 소득분위를 미리 산출바람 (당해 연도 소득분위 받은 기준 적용)
- 소득분위에 따라 배점이 되기에 신청 시 체크한 소득분위와 추후 제출서류(소득분위증명서) 정보가 다를 시 생활관 입주가 취소됨에 유의

#### 라. 대기번호

- 호실 ㉠ 또는 ㉡을 신청한 경우: 본인이 신청한 유형에만 대기번호가 부여됨
- 호실 ㉢으로 신청한 경우: ㉠과 ㉡에 모두 대기번호가 부여됨. 단, ㉠과 ㉡ 중 대기번호가 먼저 발표되는 곳으로 입주해야 하며, 본인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음

## 4. 유의 사항

### 1) 입주 자격 취소



- 가. 입주자격(학적, 학점, 주소, 우선선발자격 등) 및 정보 허위 기재 시 입주 자격이 자동 취소되며, 입주 후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 조치 및 추후 생활관 입주가 제한됨
- 나. 입주 후 생활관에 거주하는 동안, 학적변동(휴학/졸업)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父) 또는 모(母)가 주소지를 서울(노원구, 도봉구 제외) 및 서울 근교로 이전할 경우 자진 퇴거해야 하며, 적발 시 강제 퇴거 조치됨

## 2) 거주기간

- 2019. 3. 1(금) ~ 2020. 2. 28(금) 예정 ※ 분기별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만 거주 가능
- 단, 생활관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입주 및 퇴거 세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3) 기타

-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은 학부 신입생 신청 기간(2019년 2월 초 예정)에 신청

■ 문의 :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02-880-5404)

2018. 12. 19.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붙임 1] 호실선택사항 관련 안내

## 호실선택사항 관련 안내

1. 신청 대상 : 2019학년도 입주대상자(선발자)
2. 신청 기간 : 2019. 1. 28(월) 11:00 ~ 2. 1(금) 18:00
- 3 신청 항목 : 방고정 해지, 룸메이트, 생활패턴 中 택 1

### 4 신청 방법

#### 1) 방고정 해지

- 가. 호실선택사항 신청 당시(2019. 1. 28~ 2. 1)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운데, 2019년에 다른 호실로 이동하여 거주하고자 신청하는 것
- 나. 주의사항
  - 2019년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호실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호실 선택사항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바로 로그아웃하면 됨
  - 다른 항목(룸메이트, 생활패턴)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방고정 해지'가 신청됨

#### 2) 룸메이트

- 가. 룸메이트가 되고자 하는 상대를 서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
- 나. 주의사항
  - 룸메이트가 되고자 하는 2인이 모두 상대방의 정보(학번)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둘 중 하나라도 룸메이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재 정보가 누락되면 룸메이트 신청이 무효화됨
  - 룸메이트는 서로 같은 유형의 건물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즉, '방학 거주 가능동(919~926동)' 합격자들끼리, '방학 거주 불가능동(906동)' 합격자들끼리만 룸메이트 신청 가능)
  - 최초 선발자(1.28에 발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대기자와 룸메이트 신청 불가

#### 3) 생활패턴 (취침시간)

- 가. 취침시간이 비슷한 사람(밤 12시 이전 취침)끼리 호실이 배정되도록 신청하는 것
- 나. 주의사항
  - 생활패턴은 100% 매칭이 불가능하며, 신청하였더라도 생활패턴이 다른 사람과 룸메이트가 될 수 있음



[붙임 2] 구비 서류 안내

## 구비 서류 안내

### 1. 상황별 제출 서류 ※ 2019. 2.11(월)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 2019. 2.11(월)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 부, 모, 본인 모두 하나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별 등본 생략
-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및 성명 및 관계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 ※ 소득분위 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소득분위증명서 제출

#### 1)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주민등록등본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 단,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소득분위 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소득분위증명서 제출

#### 2) 본인과 부모(부와 모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주민등록등본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 소득분위 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소득분위증명서 제출

#### 3) 본인과 부모(부와 모가 모두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주민등록등본 + 모 주민등록등본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 소득분위 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소득분위증명서 제출

#### 4)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가. 이혼

##### ① 본인과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가족관계증명서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② 본인과 친권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버튼을 클릭한 후 출력해야 함(혼인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자료를 제출)

나. 사망

- ①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부모 중 생존한 쪽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확인)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② 부모 중 생존한 쪽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확인)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 소득분위 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소득분위증명서 제출

5)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해외거주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 소득분위 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소득분위증명서 제출

6) 기혼자

- 본인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홍역접종확인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 기혼자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 ※ **배우자 등본상 주소지가 지방일** 경우에만 입주 가능
- ※ 소득분위 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소득분위증명서 제출

※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서류 접수원이 추가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입주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2. 우선 선발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 복지 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2)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 및 자녀 : 아래 두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확인원(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 1부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2019년 1월 발급분에 한함)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2019년 1월 발급분에 한함)
- 5)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확인서 1부 또는 위탁시설 확인서 1부
-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7)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8)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3. 건강진단서 관련 안내

- 가. 필수검진 항목 : 흉부 X-ray 검사,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 나. 흉부 X-ray 유효기간 : 입주기준일(2019. 3. 1)로부터 6개월 이내
- 다. 진단서 유효 여부 : 보건소, 종합병원, 내과에서 발급한 **병원 직인 날인된 진단서만 유효**
  - 소견서, 확인서, 통보서, 차트 사본 불가
  - 병원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진단서는 무효 처리
- 라. 기타
  - 종합 판정란 정상자에 한해 입주 가능
  - **학내 보건소 검진 가능 일자(2월 둘째주 목요일까지), 검진 결과는 검사 2~3일 이후 생활관으로 자동 통보됨**
  - 학내에서 건강검진 받는 경우 진단 결과 값이 최종 확인 되어야 그 외 서류 접수 가능
  - 당일 서류 완료를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는 당일 발급 가능한 곳에서 진단서 발급해야함
  - 2015년 2학기~ 2018년도 기간 이내에 관악학생생활관에 입주한 적이 있는 경우, 홍역 면역력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출할 필요 없음(생활관에 홍역예방접종 관련 기록이 있음)
  - 서울대 보건진료소에서 검진 및 홍역예방접종을 한 학생도 '기숙사 입소용 학생건강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을 권장함(검진 및 예방접종 결과가 생활관으로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 확인용)